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9734호, 2023. 9. 14., 일부개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여 선불 전자지급수단 이용자를 보호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심의 요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가맹점의 범위)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해 등록한 자
2. 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해 등록한 자
3. 법 제2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금융회사(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1조의 제목 “(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을 “(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19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다른 가맹점에서 유사한 수준의 재

하나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

2.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이용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경우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금액 및 관리기관 등) ①법 제2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의2제1항 및 법 제36조의2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선불업자가 별도관리해야 하는 선불충전금의 범위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대가로 지급한 금액

나.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가목에 따른 발행 대가의 지급과 관련하여 선불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적립금을 말한다) 지급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로서 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로부터 양수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액

2. 제1호 각 목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이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
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액. 이 경우 그 사용의 전부 또는 일
부가 취소되거나 철회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양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액
다. 상환, 환급 등이 이루어져 이용자의 채권이 소멸된 선불전자지
급수단의 금액

③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1.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
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말한다)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의 영위에 관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로
서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를 포함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2. 예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마.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3. 지급보증보험의 경우: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

험 종목의 영위에 관해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④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는 경우에 복수의 선불충전금
관리기관 또는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⑤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피보험자를 이용자로 할 것

2. 선불업자가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보험회사가 이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제13조의3(선불충전금의 안전한 운용방법) ①법 제2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른 방

법을 말한다.

1.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선불충전금을 신탁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

가. 제13조의2제3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이하 이하에서 “은행등”이라 한다)에의 예치

나.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다.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의 매수

마. 은행등이 발행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수

바. 은행등이 발행한 채권 중 후순위채권 및 주식관련채권 이외의 채권의 매수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의 매수

아. 환매조건부채권(대상이 되는 증권이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권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매수

자.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2.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방법

나. 그 밖에 운용방법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선불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불충전
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자산으로 운용할 것
2.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3조의4(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 등) 법 제25조의2제6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
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다른선불업자등”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되
거나 다른선불업자등과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
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선불충전금을 양도하는 경우
2.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관련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내용에 따라 양수회사(다른선불업자
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선불충전금을 양도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3조의5(이용자의 선불충전금 청구 방법 등) ①법 제25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으려는 이용자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식별에 관한 정보
2. 선불충전금을 수령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②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법 제25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선불업자로부터 법 제25조의2제10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받아 지급할 것
2.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을 한도로 하여 해당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의 비율로 안분하여 지급할 것

제13조의6(선불충전금 지급사유 발생 사실의 통지 등) ①법 제25조의2제8항에서 “선불업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선불업자를 말한다.

②법 제25조의2제8항에서 “선불충전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선불충전금관리기관

2. 금융감독원장(법 제25조의2제7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선불업자는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선불충전금 지급의 사유·시기·방법, 그 밖에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선불업자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7(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변경기간) 법 제25조의2제9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선불충전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관한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8(선불충전금 지급에 관한 정보) 법 제25조의2제10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실지명의를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이용자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13조의9(선불충전금의 관리) ①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②선불업자는 가맹점에 대한 정산, 이용자에 대한 환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규모,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선불업자는 매 영업일 별도관리해야 하는 금액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되고 있는 금액을 점검하고 별도관리되고 있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1. 별도관리의 방법이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인 경우:
우: 다음 영업일

2. 별도관리의 방법이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인 경우: 다음 5
영업일

④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관리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불충전금의 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10(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등) ①선불업자는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②선불업자는 이용자가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선불업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게시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30억원”을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총발행잔액”을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발행잔액: 30억원

2.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제15조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전부”를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발행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대가를 미리 지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의 전부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발행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

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대상이 발행인을 제외한 제3자로 한정된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의 전부

나. 가목 외의 경우: 미상환잔액에 직전 연도 동안 제3자에게 사용된 비율을 곱한 금액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신청인의 지배구조,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이용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로, “요건을 모두 갖춘”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인

가. 정부등이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자하고 있을 것

나. 신청인의 사업 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정부등이 해당 사업을 인수할 것을 약속하는 등 그 사업의 연속성에 대하여 정부등이 보장하고 있을 것

다.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맞추어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할 것

2.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신청인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항공사업법」 제6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마일리지인 경우에 한한다)

제19조제2항 중 “별표 1의2”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제출한 자가 법 제31조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 등록 여부를 결정하
고, 그 결과를”로,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을 “신청인”으로 하
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
을 “보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기간은 제3항”을 “기간 등 금융위
원회가 정하는 기간은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①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승인을 받으려는 선불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
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항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
나 영위하려는 선불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내용
3. 그 밖에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2

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로, “허가”는 “승인”으로 본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

⑥금융위원회는 선불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승인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22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6.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의 영위에 관한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7. 법인의 합병이나 파산이나 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영업을 종료한 경우

⑦선불업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행하여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지급 및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⑧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⑨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의3(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의 요건 및 결격사유) ①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선불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식회사일 것
2.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일 것
3.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의 허가에 관한 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5.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타당하고 건전할 것
 - 가. 수입·지출의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 나. 소액후불결제업무에 필요한 자본 등 자금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 다.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추

것

라. 법령을 위반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6.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의 산정 방법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서 타당하고 건전할 것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체계를 갖출 것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상태에 관한 평가 결과 외의 정보로서 자신이 보유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는 체계를 갖출 것

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그 밖의 디지털 신기술을 개발·활용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는 선불업자(이하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라 한다)는 이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없다.

1. 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22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취소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22조의4(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의 합병·해산·폐지 등의 승인) ①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른 회사와의 합병
2. 해산 또는 소액후불결제업무의 폐지
3.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와 양수

②제1항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는 “제22조의4”로, “인가”는 “승인”으로, “법 제30조 내지 제32조”는 “제22조의3”으로, “금융회사”는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로, “전자화폐”는 “소액후불결제업무”로 본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의5(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 법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에 대한 이자(그 명칭이 무엇이든 소액후불결제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경제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를 포함하되, 지연배상 등은 제외한다)를 이용자로부터 받는 행위
2. 이용자로 하여금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가맹점수수료와 별도로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가맹점수수료를 받는 행위
4.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이용자가 연체한 이용대금은 제외한다)의 상환기일을 이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후의 날로 정하는 행위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2조의6(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①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할 수 없다.

1. 금전채무의 상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3. 예금, 적금 및 부금의 매수 또는 가입
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수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7.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륜 및 경정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9.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싸움경기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10.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11. 선불전자지급수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및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대가 및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12.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할 것

2.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 신청일 현재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연령 이상일 것. 다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대중교

통수단의 이용에 따른 교통요금을 지불할 목적으로 소액후불결제업무
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성년 연령 미만인 사람으로서 12세 이상인
사람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3.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용자의 소액
후불결제업무 이용한도액을 초과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22조의7(소액후불결제업무를의 이용한도 및 총제공한도) ①소액후불겸
영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한
도를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 30만원
2.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의 총제공한도(분기 말 기준 소액후불겸영선
불업자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소액후불결제업무를의 이용한도액의 총
합계액):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
한 금액의 합계액(소액후불결제업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의 100
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②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
에 따른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의 총제공한도가 감소한 경우에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이미 부여한 이
용한도액을 한도로 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계속하여 제공할 수 있
다.

제22조의8(소액후불결제업무를의 경영건전성 관리)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

는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경영건전성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항상 충족할 것
2.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채권”이라 한다)과 미사용약정(이용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한도액에서 변제되지 아니한 이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이용자가 미래에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미사용약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0제2호에 따른 분류기준 및 운용기준[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중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잔여금액에 대한 결제를 이월함에 발생하는 채권을 제외한 채권(이하 “신용판매자산”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을 준용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관리할 것
3. 소액후불결제업무채권 및 소액후불결제업무미사용약정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0제3호에 따른 적립기준(신용판매자산 및 미사용약정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을 준용하여 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할 것

제22조의9(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신용정보의 관리) ①소액후불결제업자(이하 “소액후불결제업자”라 한다)는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연체정보(이용자가 상환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채무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연체정보”라 한다)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자의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체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다른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산정에 필요한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에게 제공하는 자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자와 연체정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연체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공받은 연체정보를 다른 신용정보와 구분하여 관리할 것

2. 제공받은 연체정보를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 외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

3. 제공받은 연체정보를 소액후불결제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2조의10(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채권의 관리) ①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용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의 상환지연에 따른 이용자

의 배상 등에 관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신금융기관”은 “소액후불결제업자”로 본다.

제22조의11(소액후불결제업무이용자의 보호) 소액후불결제업자는 이용자와 소액후불결제업자의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이용자가 소액후불결제업자에게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구매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이용한도 및 그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4. 신용정보(연체정보를 포함한다)의 처리방법 및 절차
5. 소액후불결제업자의 이용대금의 상환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부과기준 및 채권 회수 절차에 관한 사항
6. 분쟁의 처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소액후불결제업자를 이용한 현금유통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2조의12(선불업자의 행위규칙) ①법 제36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이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36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조

건을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를 말한다.

③법 제36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36조의2제3호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에게 법 제19조제1항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행위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 외의 제3자에게 선불충전금 관리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행위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
4. 비상상황 발생 시 선불충전금 정보의 정확성과 가용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법 제25조의2제10항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하는 경우에 선불충전금을 제13조의3에 따른 안전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6.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신탁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는 경우에 선불충전금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제13조의3에 따른 안전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7. 법 제25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법 제25조의2제10항 각 호의 정보로서 지급에 필요한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8.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자신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9. 이용자로 하여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예금이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금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10. 법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을 모집함에 있어 제4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제4조의2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가맹점으로 모집하는 행위
11. 법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하는 경우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에 관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축소 또는 변경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 게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12.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2조의13(가맹점의 준수사항) 법 제3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0호나목의 가맹점을 모집함에 있어 제4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만을 가맹점으로 모집할 것
2.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0조제1항에 제1호의5, 제2호의6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5. 법 제25조의2제12항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관리 상황의 점검

2의6.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의 승인을 하기 위한 검토 및 승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확인

6. 제13조의9제4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의 접수

제31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35조의2 및 이 영 제22조의4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제31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사무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에 머목부터 서목까지를 각각 서목부터 저목까지로 하고 어목부터 터목까지를 각각 노목부터 보목까지로 하며, 머목과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법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1조 제1항제2호	5,000
버. 법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법 제51조 제1항제3호	5,000

별표 3 제2호어목(종전의 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4호”로 하고, 제2호저목(종전의 서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

별표3 제2호에 처목부터 고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법 제36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	법 제51조 제1항제5호	3,000
커. 법 제36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고 해당 금액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1조 제1항제6호	3,000
터. 법 제3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1조 제1항제7호	1,000
허. 법 제36조의2제4호를 위반하여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1조 제1항제8호	3,000
고. 법 제37조제5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1조 제1항제9호	5,000

별표 3 제2호노목(중전의 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10호”로 하고 제2호도목(중전의 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10호”로 하며, 제2호모목(중전의 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11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 법 제2조제1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발행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 또는 자회사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 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동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 <신 설>	<삭 제> 제4조의2(가맹점의 범위)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해 등록한 자 2. 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를

제11조(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
방법) ① ~ ④ (생략)

<신설>

행하기 위해 등록한 자

3. 법 제28조제2항 각 호외의 부
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등록
이 면제된 금융회사(이 조 제1
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자

제11조(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
방법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
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9조제2항제4호 단서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의 다른 가맹점에서 유사한
수준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

2.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
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
하여 이용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
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경

<신 설>

우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3조의2(선불충전금의 별도관
리 금액 및 관리기관 등) ①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25조의2제1항
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
한다.

②법 제25조의2제1항 및 법 제3
6조의2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선
불업자가 별도관리해야 하는 선
불충전금의 범위는 제1호의 금
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으
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
단의 발행 대가로 지급한
금액

나.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
립금(가목에 따른 발행 대
가의 지급과 관련하여 선

불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
하는 적립금을 말한다) 지
급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
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로서 그 경제적 이익
에 해당하는 금액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선
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
용자가 다른 이용자로부터
양수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의 금액

2. 제1호 각 목에 따른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이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
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
급하는데 사용한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금액. 이 경우
그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취소되거나 철회된 경
우는 제외한다.

나.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
게 양도한 선불전자지급수
단의 금액

다. 상환, 환급 등이 이루어져
이용자의 채권이 소멸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액

③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1.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말한다)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의 영위에 관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를 포함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2. 예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마.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3. 지급보증보험의 경우: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 종목의 영위에 관해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④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별

<신 설>

도관리하는 경우에 복수의 선불
충전금관리기관 또는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⑤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피보험자를 이용자로 할 것
2. 선불업자가 법 제25조의2제7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경우에 보험회사가
이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
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요건

제13조의3(선불충전금의 안전한
운용방법) ①법 제25조의2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
전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선불
충전금을 신탁의 방법으로 별
도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목
에 따른 방법
가. 제13조의2제3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이하 이 항에서 “은행등”이라 한다)에 의 예치

나.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다.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의 매수

마. 은행등이 발행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수

바. 은행등이 발행한 채권 중 후순위채권 및 주식관련채권 이외의 채권의 매수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의 매수

아. 환매조건부채권(대상이

되는 증권이 나목부터 사
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
권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매수

자.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안
전한 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2.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직
접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
에 따른 방법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의 방법

나. 그 밖에 운용방법의 안전
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선불
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자산으로 운용할 것

<신 설>

2.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제13조의4(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 등) 법 제25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다른선불업자등”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선불업자등과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선불충전금을 양도하는 경우
 2.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관련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내용에 따라 양수회사(다른선불업자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선불충전금을 양도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

<신 설>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3조의5(이용자의 선불충전금
청구 방법 등) ①법 제25조의2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불충전
금을 지급받으려는 이용자는 선
불충전금관리기관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
함한다)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
단의 식별에 관한 정보

2. 선불충전금을 수령받을 계좌
에 관한 정보

②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법 제
25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
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
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야 한다.

1. 선불업자로부터 법 제25조의
2제10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
받아 지급할 것

2.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을 한도로 하여 해
당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

<신 설>

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이
용자별 선불충전금의 비율로
안분하여 지급할 것

제13조의6(선불충전금 지급사유
발생 사실의 통지 등) ①법 제2
5조의2제8항에서 “선불업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선불업
자를 말한다.

②법 제25조의2제8항에서 “선
불충전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
의 자를 말한다.

1. 선불충전금관리기관

2. 금융감독원장(법 제25조의2
제7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는 제외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선불업자는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
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선불충전금 지급의 사유·시기
·방법, 그 밖에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광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이동
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

<신 설>

<신 설>

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밖
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선불업자가 가상의 공간
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한다.

제13조의7(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변경기간) 법 제25조의2제9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이란 선불충전금을 지
급받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관한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선불충전
금관리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기
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8(선불충전금 지급에 관
한 정보) 법 제25조의2제10항제
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실지명의를 확
인되지 아니하는 선불전자지
급수단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이용자의 청구에 응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신 설>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정보

제13조의9(선불충전금의 관리) ①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자기
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②선불업자는 가맹점에 대한 정
산, 이용자에 대한 환급 등의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
금의 규모,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을 정하
여야 한다.

③선불업자는 매 영업일 별도관
리해야 하는 금액과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되
고 있는 금액을 점검하고 별도
관리되고 있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부족한 금액을 추
가로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1. 별도관리의 방법이 법 제25
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인 경우: 다음 영업일

2. 별도관리의 방법이 법 제25
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인 경
우: 다음 5영업일

<신 설>

④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관리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불충전금의 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10(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등) ①선불업자는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②선불업자는 이용자가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

제15조(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① ~ ③ (생략)

④법 제28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맹점이 1개의 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 안에만 위치할 것

2.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일 것

3. 가맹점이 1개의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안에만 위치할 것

4. 가맹점이 1개의 사업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장을

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선불업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게시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15조(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말한다) 안에만 위치할 것

⑤ 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0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총발행잔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신 설>

⑥ 법 제28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신 설>

④ -----

----- 다음 각 호의 금액-----

-----.

---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

액-----

-----.

1. 발행잔액: 30억원

2.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⑤ -----

----- 중 다음 각 호

의 금액-----

-----.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 「근로

복지기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실시

와 관련하여 발행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제1

항에 따른 사업주가 대가를

<신 설>

⑦ · ⑧ (생 략)

제18조(재무건전성 기준 등) ①
(생 략)

②신청인이 제1항의 검사대상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미리 지불한 선불전자지급수
단의 미상환잔액의 전부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선불전
자지급수단이 발행된 경우: 다
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

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대상이 발행인을 제외한
제3자로 한정된 경우: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
액의 전부

나. 가목 외의 경우: 미상환잔
액에 직전 연도 동안 제3
자에게 사용된 비율을 곱
한 금액

⑥ · ⑦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제18조(재무건전성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의 자기자본·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인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그 비율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가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
재산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
유하고 있거나 출자하고 있을
것

----- . 다만, 신청인의 지배구조, 겸영하고 있는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이용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1. 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
춘 신청인

가. 정부등이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자하고 있을 것

나. 신청인의 사업 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정부등이 해당 사업을 인수할 것

2. <u>신청인의 사업 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정부등이 해당 사업을 인수할 것을 약속하는 등 그 사업의 연속성에 대하여 정부등이 보장하고 있을 것</u> 3. <u>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맞추어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할 것</u> ③ (생략) 제19조(대주주인 출자자 등) ① (생략) ②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이라 함은 <u>별표 1의2</u>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u>을 약속하는 등 그 사업의 연속성에 대하여 정부등이 보장하고 있을 것</u> 다. <u>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맞추어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할 것</u> 2. 「<u>항공사업법</u>」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신청인(발행하는 <u>선불전자지급수단</u>이 「<u>항공사업법</u>」 제6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마일리지인 경우에 한한다)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대주주인 출자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5조 -
---	---

제20조(허가와 등록의 신청방법 등) ① ~ ③ (생략)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31조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생략)

<신설>

제20조(허가와 등록의 신청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 신청인-----
---.

⑤-----

----- 보완-----

-----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은 제3항 및 제4항-----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①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선불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

까지의 사항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 외의 사업을 영위하
고 있거나 영위하려는 선불업
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내용

3. 그 밖에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및 확인에 관하
여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준
용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로, “허가”는 “승
인”으로 본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
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
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보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

⑥금융위원회는 선불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승인 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22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6.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의 영위에 관한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7. 법인의 합병이나 파산이나 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신 설>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영업을
종료한 경우

⑦선불업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행하여진 소액후
불결제업무의 지급 및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⑧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때
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
다.

⑨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조
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의3(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의 요건 및 결격사유) ①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선불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1. 주식회사일 것

2.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일 것

3.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의 허가에 관한 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5.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타당하고 건전할 것

가. 수입·지출의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나. 소액후불결제업무에 필요한 자본 등 자금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다.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라. 법령을 위반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6.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의 산정 방법이 다음 각 목

의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서
타당하고 건전할 것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따른 정보를 적극 활용
하는 체계를 갖출 것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제공
받은 신용상태에 관한 평
가 결과 외의 정보로서 자
신이 보유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는 체계를
갖출 것

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 가목 및 나목
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그
밖의 디지털 신기술을 개
발·활용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 소액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하는 선불업자(이하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라 한다)는 이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없다.

1. 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22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취소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22조의4(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

<신 설>

<신 설>

의 합병·해산·폐지 등의 승인) ①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른 회사와의 합병

2. 해산 또는 소액후불결제업무의 폐지

3.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와 양수

②제1항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는 “제22조의4”로, “인가”는 “승인”으로, “법 제30조 내지 제32조”는 “제22조의3”으로, “금융회사”는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로, “전자화폐”는 “소액후불결제업무”로 본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의5(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 법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에 대한 이자(그 명칭이 무엇이든 소액후불결제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경제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를 포함하되, 지연배상 등은 제외한다)를 이용자로부터 받는 행위

2. 이용자로 하여금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가맹점수수료와 별도로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가맹점수수료를 받는 행위

4.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이용자가 연체한 이용대금은 제외한다)의 상환기일을 이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후의 날로 정하는 행위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

<신 설>

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2조의6(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①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
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액후
불결제업무를 제공할 수 없다.

1. 금전채무의 상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
른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3. 예금, 적금 및 부금의 매수
또는 가입
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수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
전의 지급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
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
른 금전의 지급
7. 「경륜·경정법」 제2조제1
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륜 및
경정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다른 금전의 지급

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9.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싸움경기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10.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11. 선불전자지급수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및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대가 및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12.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②소액후불점영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 본인이 별도로 신청

<신 설>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소액
후불결제업무의 이용 신청일
현재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연령 이상일 것. 다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대중교
통수단의 이용에 따른 교통요
금을 지불할 목적으로 소액후
불결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성년 연령 미만인 사람
으로서 12세 이상인 사람에게
도 제공할 수 있다.

3.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가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
용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 이
용한도액을 초과하여 소액후
불결제업무를 제공하지 아니
할 것

제22조의7(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및 총제공한도) ①소
액후불겸영선불업자는 소액후
불결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한도를 모두 준수
하여야 한다.

<신 설>

1.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 30만 원

2.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의 총 제공한도(분기 말 기준 소액 후불겸영선불업자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액의 총합계액):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소액후불결제업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②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의 총제공한도가 감소한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이미 부여한 이용한도액을 한도로 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계속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의8(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경영건전성 관리)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경영건전성 관리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항상 충족할
것

2.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공으
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채권”이라
한다)과 미사용약정(이용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한도액
에서 변제되지 아니한 이용금
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이용
자가 미래에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소액후
불결제업무미사용약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여신전문금
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0
제2호에 따른 분류기준 및 운
용기준[신용카드로 물품을 구
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
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중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잔여금액에 대한 결
제를 이월함에 발생하는 채권
을 제외한 채권(이하 “신용판
매자산”이라 한다)에 관한 기
준을 말한다]을 준용하여 자

<신 설>

산의 건전성을 관리할 것

3. 소액후불결제업무채권 및 소액후불결제업무미사용약정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0제3호에 따른 적립기준(신용판매자산 및 미사용약정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을 준용하여 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할 것

제22조의9(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신용정보의 관리) ①소액후불결제업무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연체정보(이용자가 상환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채무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연체정보”라 한다)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자의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체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다른 소액후불결제업무선불업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
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
도 산정에 필요한 개인신용평
가 결과를 소액후불겸영선불
업자에게 제공하는 자로 한정
한다)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자

②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는 제1
항 각 호의 자와 연체정보의 제
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연체정보를 제
공받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

1. 제공받은 연체정보를 다른
신용정보와 구분하여 관리할
것

2. 제공받은 연체정보를 소액후
불겸영선불업자 외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

3. 제공받은 연체정보를 소액후
불결제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
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신 설>

<신 설>

여 고시하는 사항

제22조의10(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채권의 관리) ①소액후불점영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용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의 상환지연에 따른 이용자의 배상 등에 관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신금융기관”은 “소액후불점영선불업자”로 본다.

제22조의11(소액후불결제업무이용자의 보호) 소액후불점영선불업자는 이용자와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이용자가 소액후불점영선불업자에게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구매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이용한도 및 그 산정기준에

<신 설>

관한 사항

4. 신용정보(연체정보를 포함한 다)의 처리방법 및 절차

5.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 금의 상환지연에 따른 지연배 상금의 부과기준 및 채권 회 수 절차에 관한 사항

6. 분쟁의 처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이용한 현금유통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 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

제22조의12(선불업자의 행위규칙)

①법 제36조의2제1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이란 제18조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말 한다.

②법 제36조의2제3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선 불전자지급수단의 가맹점을 축 소하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하려

는 날의 7일 전까지를 말한다.

③법 제36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36조의2제3호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에게 법 제19조제1항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행위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 외의 제3자에게 선불충전금 관리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행위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

4. 비상상황 발생 시 선불충전금 정보의 정확성과 가용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법 제25조의2제10항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직

접 운용하는 경우에 선불충전
금을 제13조의3에 따른 안전
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운
용하는 행위

6.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신
탁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는
경우에 선불충전금관리기관으
로 하여금 제13조의3에 따른
안전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7. 법 제25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지
급하는 경우에 법 제25조의2
제10항 각 호의 정보로서 지
급에 필요한 정보를 선불충전
금관리기관에 정당한 이유 없
이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8.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발
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
하게 하거나 타인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자신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
는 행위

9. 이용자로 하여금 선불전자지

<신 설>

급수단을 예금이나 「예금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금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
위

10. 법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을 모집함에 있어 제4
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제4조
의2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를 가맹점으로 모집하는 행위

11. 법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
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
급하는 경우에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환급에 관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축
소 또는 변경되는 날로부터 3
0일 이상 게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12.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
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2조의13(가맹점의 준수사항)
법 제37조제5항제4호에서 “대

제30조(권한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 1의4. (생략)

<신설>

2. ~ 2의5. (생략)

<신설>

3. ~ 5. (생략)

<신설>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0호나목의 가맹점을 모집함에 있어 제4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만을 가맹점으로 모집할 것

2.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0조(권한의 위탁) ①-----

-----.

1. ~ 1의4. (현행과 같음)

1의5. 법 제25조의2제12항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관리 상황의 점검

2. ~ 2의5. (현행과 같음)

2의6.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의 승인을 하기 위한 검토 및 승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확인

3. ~ 5. (현행과 같음)

6. 제13조의9제4항에 따른 보고

② (생략)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3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삭제 2. ~ 3. (생략) <u><신설></u> 4. ~ 9. (생략) ② (생략)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u>서 제출의 접수</u>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 ----- ----- ----- ----- ----- ----- ----- ----- -----. 2. ~ 3. (현행과 같음) <u>3의2. 법 제35조의2 및 이 영 제22조의4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u> 4.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사무</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2621